

工業發展法(全文)

先進工業社會를 指向하기 爲한 工業發展法이 政府議案으로 12월 17일 國會 本會議에서 통과되었다. 60年代부터 高度의 經濟成長에 따라 그동안 制定되었던 기계工業진흥법, 非鐵 금속製鍊事業法, 섬유공업근대화촉진법 등 製造工業과 關連된 7個法이 本法의 制定으로 폐지된다.

새로운 本法은 民間自律경제체제의 確立으로 경쟁력을 向上시켜 나아가면서 産業구조를 改善하여 균형적인 工業發展을 이룩하는데 立法趣旨가 있다.

本法의 全文과 商工部의 해설을 轉載한다. <編輯者 註>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工業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工業의 合理化를 促進함으로써 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適用範圍) 이 法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工業 및 이에 必須的으로 關連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業種(이하 “工業”이라 한다)에 適用한다.

第3條(工業發展施策의 基本方向) ① 工業의 발전은 個人의 創意를 바탕으로 自律과 競爭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政府는 第1條의 規定에 의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施策을 강구하여 야 한다.

1. 工業技術 및 生産性的의 향상
2. 資源의 효율적인 開發 및 이용
3. 人力의 養成 및 효율적인 管理
4. 工業自立基盤의 확충

③ 工業을 영위하는 事業者(이하 “事業者”라 한다)는 第2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施策이 효율적으로 達成될 수 있도록 적극 協助하여 야 한다.

第2章 工業合理化的의 促進

第4條(合理化業種의 指定申請) 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영위하는 業種을 工業의 合理化를 促進하기 위한 對象業種(이하 “合理化業種”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줄것을 商工部長官에게 申請할 수 있다.

第5條(合理化業種의 지정) ① 商工部長官은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申請을 받은 때에는 당해 業種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정한 期間을 정하여 이를 合理化業種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申請한 事業者의 數가 당해 業種을 영위하는 全体 事業者의 相當數에 達하거나 그 申請을 한 事業者의 經營規模 또는 生産規模가 당해 業種의 事業分野에 있어서 大部分을 占하여야 한다.

1. 다음 各目的의 1에 해당하는 業種으로서 工業發展과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國際競爭力의 확보가 緊要하다고 인정하고 事業者의 自主的인 노력만으로 그 확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業種

가. 工業技術의 향상이나 設備의 개선등을

통하여 生産性を 현저히 増進할 수 있는 경우

나. 資源 및 에너지의 節約效果 또는 附加價值增大效果가 현저히 클 경우

다. 生産 및 經營活動에 있어 事業者의 共同的인 隘路事項을 解決할 수 있는 경우

2. 産業構造의 變化 등 國內外 經濟与件의 變化로 事業者의 經營規模·生産規模 또는 生産方法의 부적당한 상태가 長期間 계속될 우려가 있는 業種으로서 그 상태를 克服하는 것이 工業發展과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에 緊要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② 商工部長官은 第1項 本文後段의 요건이 충족된 申請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第1項第1号 또는 第2号의 業種을 영위하는 事業者가 自發的으로 第4條의 申請을 할 것으로 期待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期間을 정하여 당해 業種을 合理化業種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商工部長官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合理化業種으로 指定하고자할 때에는 利害当事者(團體를 포함한다)의 意見を 들어야 한다.

④ 商工部長官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合理化業種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第21條에 規定에 의한 工業發展審議會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審議를 거쳐야 한다.

⑤ 商工部長官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合理化 業種을 지정할 때에는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第6條(合理化計劃의 수립) ① 商工部長官이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合理化業種을 지정할 때에는 第5條 第1項 第1号 또는 第2号의 구분에 따라 業種別로 工業의 合理化를 促進하기 위한 計劃(이하 “業種別合理化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業種別合理化計劃을 變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第1項의 業種別合理化計劃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第5條第1項第1号에 해당되는 業種

가. 필요한 技術의 내용 및 開發促進에 관한 사항

나. 製品의 性能 또는 品質水準에 관한 사항

다. 生産規模의 적정화 또는 生産品目的 진문화에 관한 사항

라. 共同行爲에 관한 사항

마. 기타 業種別로 工業의 合理化를 促進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第5條第1項第2号에 해당되는 業種

가. 施設·設備의 처리에 관한 사항

나. 施設·設備의 新設·增設 또는 改造·改替의 제한 및 금지에 관한 사항

다. 經營規模·生産規模 또는 生産方法의 적정화에 관한 사항

라. 合併, 營業의 전부 또는 主要部分의 讓渡·讓受 등 事業提携에 관한 사항

마. 事業의 轉換에 관한 사항

바. 共同行爲에 관한 사항

사. 기타 業種別로 工業의 合理化를 促進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商工部長官이 第1項의 業種別合理化計劃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第5條第4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④ 政府는 第2項 第2号의 合理化計劃을 樹立·實施함에 있어 發生한 雇傭問題에 있어 發生한 雇傭問題에 대하여 必要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第7條(業種別合理化計劃의 실시) 合理化業種으로 지정된 業種을 영위하는 事業者 및 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合理化事業者”라 한다)는 第6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業種別合理化計劃이 公告된 때에는 그 業種別合理化計劃이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自主的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第8條(勸告·調整등) ① 商工部長官은 合理化事業者의 自主的인 노력만으로 당해 業種의 業種別合理化計劃의 효율적인 실시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期間을 정하여 合理化事業者에게 共同行爲등 業種別合理化計

劃의 실시를 促進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범
위안에서 필요한 勸告 또는 調整을 할 수 있
다.

1. 業種別合理化計劃에서 정하는 合理化
目標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초과
하지 아니할 것.

2. 一般消費者 및 關聯事業者의 이익을 부
당하게 害할 우려가 없을 것.

3. 合理化事業者를 不當하게 차별하지 아
니할 것.

② 商工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勸告
또는 調整에 따르지 아니하는 合理化事業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한 期間
내에 그 勸告 또는 調整에 따른 措置를 할 것
을 命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에 따라 措
置를 이행한 合理化事業者는 商工部令이 정하
는 사항을 商工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商工部長官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
命令을 하고자 할 때에는 第5條 第4項의 規
定을 準用한다.

第9條(事業內容등의 登錄) ① 商工部長官은 業
種別合理化計劃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
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
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合理化業種 中에서
事業內容 및 施設·設備를 登錄하여야 할 業
種을 지정할 수 있다.

② 商工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
錄을 하여야 할 業種을 지정한 때에는 당해
業種의 合理化業者는 商工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商工부에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사항
을 變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商工部
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다.

第10條(合理化事業에 대한 지원) ① 政府는 業
種別合理化計劃을 실시하는 合理化事業者 에
대하여 金融·租稅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
다.

② 政府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을 하고
자 할 때에는 第5條 第4項의 規定을 準用한
다.

第3章 工業技術 및 生産性的의 향상

第11條(工業技術 및 生産性向上의 獎勵) 商工
部長官은 事業者로 하여금 工業技術 및 生産
性的의 향상을 促進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業을 실시하도록 獎勵하여야 한다.

1. 企業의 附設研究所의 設置 및 운영

2. 技術開發促進法 第10條의 3의 規定에
의한 産業技術研究 組合의 設立 및 운영

3. 特定研究機關育成法의 適用을 받는 特
定研究機關 및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生
産性本部의 積極적인 活用

4.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工業基盤技術開
發事業 및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工業技術開
發促進事業에의 積極적인 참여

5. 研究開發投資의 促進 및 擴大

6. 外國先進技術의 導入

7. 기타 工業技術 및 生産性的의 향상을 促
進하기 위하여 필요한 事業

第12條(工業基盤技術向上計劃의 수립 및 公告)

① 商工部長官은 工業發展에 緊要한 技術로서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技術分野의 技術水準
을 효율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計劃(이하 “工
業基盤技術向上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工業基盤技術向上 計
劃을 變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工業의 共通的인 隘路事項으로 되어있
는 技術分野

2. 事業者의 自主的인 노력만으로 技術向
上을 期待하고 어렵다고 인정되는 技術分野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業基盤技術 向上
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技術人力の 需給展望 및 養成에 관한
사항

3. 工業技術水準의 향상을 위한 教育 및
技術指導에 관한 사항

4. 施設·設備 및 工程의 개선에 관한 사
항

5. 기타 第1項 各号의 해당하는 技術分野의 技術水準을 효율적으로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商工部長官이 工業基盤技術向上計劃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第5條 第4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13條(工業基盤技術開發事業) ① 商工部長官은 工業基盤技術向上計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科學技術處長官과 協議하여 다음 各号의 1에 該當하는 機關으로 하여금 工業發展에 필요한 技術開發事業(이하 “工業基盤技術開發事業”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國·公立研究機關
2. 特定研究機關育成法의 適用을 받는 特定研究機關
3. 企業의 附設研究所 및 産業技術研究組合
4. 敎育法에 의한 大學 또는 專門大學

② 商工部長官은 第1項 各号의 1에 해당하는 機關이 工業基盤技術開發事業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費用에 充당되는 資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出損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出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4條(工業技術開發促進事業) ① 商工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工業技術의 향상을 促進하기 위하여 다음 各号의 事業을 실시한다.

1. 技術水準의 評價
2. 技術 및 研究에 관한 情報의 流通
3. 試驗研究施設·設備의 利用斡旋
4. 事業者와 國內外學界·政府·外國政府·國際機構 및 外國의 技術關係機構와의 共同研究
5. 開發 및 應用된 新技術의 事業化促進事業
6. 技術向上을 위한 指導事業
7. 기타 事業者의 工業技術의 향상을 促進

하게하기 위하여 필요한 事業

② 商工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을 실시함에 있어 人力 또는 施設·設備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第13條 第1項 各号의 機關에 대하여 필요한 派遣勤務 또는 施設·設備의 活用을 요청할 수 있다.

第15條(新技術事業投資에 대한 施策講究) 政府는 新技術을 開發하거나 應用하여 이를 事業化하는 事業者 및 이에 出資를 주된 事業으로 하는 者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第16條(韓國生産性本部) ① 工業의 生産性向上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韓國生産性本部(이하 “生産性本部”라 한다)를 設立했다.

② 生産性本部는 法人으로 한다.

③ 生産性本部는 그 주된 事業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④ 生産性本部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內外외의 필요한 곳에 支部를 둘 수 있다.

⑤ 生産性本部는 生産性向上을 위하여 다음 各号의 事業을 실시한다.

1. 經營診斷 및 指導事業
2. 敎育訓練事業
3. 調査研究事業
4. 技法開發 및 普及事業

5. 商工部長官이 生産性向上을 위하여 委託한 事業

6. 기타 生産性本部의 定款이 정하는 事業

⑥ 生産性本部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目的의 達成에 필요한 經費를 調達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收益事業을 할 수 있다.

⑦ 生産性本部가 아닌 者는 韓國生産性本部 또는 이와 유사한 名稱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生産性本部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4章 工業發展基金

第17條(基金의 設置) 政府는 工業의 均衡 있는 발전과 工業의 合理化를 促進하기 위한 필요한 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工業發展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第18條(基金의 造成) ① 基金은 다음 各号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 政府의 出損金 또는 融資金
2. 事業者 또는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團體등의 出損金
3. 基金의 운용으로 생기는 收益金
4.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收入金

② 政府는 第1項의 造成財源외에 國內에서 資金을 借入하거나 外國에서 借款을 얻어 그 資金을 基金에 貸與할 수 있다.

第19條(基金의 운용·管理) ① 基金은 商工部長官이 운용·管理한다. 다만, 商工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 團體로 하여금 基金을 운용·管理하게 할 수 있다.

② 基金의 운용·管理 및 區分記理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0條(基金의 사용) 基金은 다음 各号의 事業을 위하여 사용한다.

1. 第6條 第1項에 規定에 의한 業種別 合理化計劃의 실시를 위한 事業
2. 第12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業 基盤技術向上計劃의 실시를 위한 事業
3. 第16條 第5項 第5号의 規定에 의하여 商工部長官이 生産性本部에 委託하여 행하는 事業
4. 기타 工業의 均衡있는 발전과 工業 合理化의 促進을 위하여 필요한 事業

第5章 工業發展審議會 및 事業者團體等

第21條(工業發展審議會의 設置) 事業者 및 工業

에 관한 專門家의 知識을 최대한 活用하고 그 의견을 들어 工業發展을 위한 合理的인 政策의 수립을 도모하고 이 法에 정한 사항을 審議하며 商工部長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商工부에 工業發展審議會(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第22條(組織 및 운영) 審議會의 組織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3條(事業者團體) ① 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商工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業種別로 당해 業種의 事業者團體(이하 “事業者 團體”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② 事業者團體는 法人으로 한다.

③ 事業者團體의 定款記載事項과 운영 및 監督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 事業者團體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 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24條(事業) 事業者團體는 당해 業種의 발전을 위하여 業種別로 다음 各号의 事業을 실시한다.

1. 發展方向에 관한 調查·研究事業
2. 利益增進을 위한 事業
3. 業種別合理化計劃의 추진을 위한 事業
4. 生産性向上 등 國際競爭力 향상을 위한 事業
5. 商工部長官이 당해 業種의 발전을 위하여 委託한 事業
6. 기타 事業者團體의 定款이 정하는 事業

第25條(共濟事業團體) ① 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商工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다음 各号의 1에 해당하는 共濟事業團體를 設立할 수 있다.

1. 機械類의 品質保障과 瑕疵保證을 目的으로 하는 機械共濟事業團體

2. 建造중 또는 建造후 引渡전 의 船舶이 事故로 인하여 損失을 입은 경우 그 損

- 失에 대한 補償을 目的으로 하는 造船共濟
- ② 共濟事業團체는 法人으로 한다.
- ③ 共濟事業團体の 定款記載事項과 운영 및 監督등에 關하여 關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④ 共濟事業團체에 關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6章 補 則

第26條(共同行爲등에 대한 特例) ① 第6條 第1項의 業種別 合理化計劃에 의하여 실시하는 合併, 營業의 전부 또는 主要部分의 讓渡·讓受 등의 事業提携 및 共同行爲에 대하여는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② 商工部長官은 合併, 營業의 전부 또는 主要部分의 讓渡·讓受등의 事業提携 및 共同行爲에 關한 사항을 포함하는 業種別合理化計劃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經濟企劃院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第27條(資料 제출) 商工部長官은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合理化事業者, 生産性本部 및 事業者團체에 대하여 그 事務에 關한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第28條(權限의 委任·委託) 이 法에 의한 商工部長官의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工業振興廳長, 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하거나 生産性本部, 中小企業振興公團, 事業者團체 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法人 또는 團체에 委託할 수 있다.

第7章 罰 則

第29條(罰則) ① 第8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에 위반한 者は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 第9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

지 아니한 者は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③ 第1項의 罪는 商工部長官의 告發이 있어야 論한다.

第30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사용인 기타 從業員이 該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關하여 第29條의 위반 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該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31條(過怠料) ①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資料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資料를 제출한 者は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② 第16條 第7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は 50萬 元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이 定하는 바에 따라 商工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분에 불복이 있는 者は 30일내에 商工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が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商工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該 事實을 通報하여야 하며, 該 通報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 裁判을 한다.

⑥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の 예에 依하여 이를 徵收한다.

第32條(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商工部長官이 第28條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한 業務에 종사하는 生産性本部, 中小企業 振興公團, 事業者團체, 大統領令이 定하는 法人 또는 團체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법은 1986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律의 廢止) ① 다음 各号의 法律은 이를 廢止한다.

1. 機械工業振興法
2. 造船工業振興法
3. 電子工業振興法
4. 鐵鋼工業育成法
5. 非鐵金屬製鍊事業法
6. 石油化學育成法
7. 纖維工業近代化促進法

② 이 법 施行 당시 중전의 非鐵金屬 製鍊事業法 第2條·第3條·第8條·第9條 및 第17條의 規定은 1989年 12月 31日까지 그 效力을 가진다.

③ 이 법 施行전의 第1項 各号의 廢止되는 法律에서 정한 행위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중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韓國生産性本部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 당시의 財團法人 韓國生産性本部는 이 법에 의하여 設立된 生産性本部로 본다.

第4條(基金에 관한 經過措置) ① 이 법 施行 당시 중전의 機械工業振興法에 의하여 造成된 機械工業振興基金, 중전의 電子工業振興法에 의하여 造成된 電子工業振興基金은 이 법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基金으로 본다.

② 이 법 施行 당시 중전의 纖維工業近代化促進法에 의하여 造成된 纖維工業近代化基金중 商工部長官이 인정한 政府의 出損金은 이 법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基金으로 보며, 그 殘額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韓國纖維産業聯合會가 이를 運用·管理한다.

③ 이 법 施行 당시의 韓國造船工業協同組合 및 社團法人 韓國造船工業協會는 第25條 第1項 第2号의 規定에 의한 造船共濟事業團體로 보며, 중전의 造船工業振興法 第6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造成된 基金을 運用·管理한다.

第5條(事業者團體에 관한 經過措置) ① 중전의 機械工業振興法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機械工業振興會, 중전의 電子工業振興法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電子工業振興會, 중전의 纖維工業近代化促進法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纖維産業聯合會는 각각 이 법 第2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事業者團體로 본다.

② 이 법 施行 당시 第23條 第1項의 事業者團體와 유사한 目的으로 民法에 의하여 設立된 社團法人이 第23條 第1項의 事業者團體가 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期間내에 그 組織을 變更하여 第23條 第1項의 事業者團體가 될수 있다. 이 경우 당해 社團法人은 이 법에 맞추어 定款을 變更하고 商工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6條(地方稅法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당시 中전의 鐵鋼工業育成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商工部長官의 指정을 받은 鐵鋼工業者, 中전의 石油化學工業育成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團地를 造成·管理·운영하기 위하여 商工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支援事業者에 대하여 施方稅法 第110條의 第3項, 第128條의 2 第3項, 第184條의 第3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中전의 예에 의한다.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 租稅減免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 第1号 내지 第5号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나프타 分解工業
2. 銑鐵·特殊鋼 또는 轉爐에 의하여 銑鐵을 製造하는 銑鐵工業
3. 機械工業
4. 電子工業
5. 造船工業

第8條(다른 法律과의 關係) 이 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附則 第2條에서 廢止되는 法律 또는 그 規定을 引用한 경우에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그 廢止되는 規定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